

곤지암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요건

1. 우리 농협 구역에 주소 및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(단, 사업장이 우리 농협 구역이 아닌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확인서 제출 필수)
2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3.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4. 잠종 0.5상자(2만립(粒) 기준상자)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
5.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
구 분	가축의 종류	사육기준
대가축	소, 말, 노새, 당나귀	2마리
중가축	돼지(젓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한다), 염소, 면양, 사슴, 개	5마리(개의 경우는 20마리)
소가축	토끼	50마리
가 금	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	100마리
기 타	꿀벌	10군

6.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

가축의 종류	사육기준 (마리 이상)
오 소 리	3
타 조	3
메 추 리	300
평	30

곤충의 종류	사육기준 (마리 이상)
흰점박이꽃무지	1,000
장수풍뎅이	500
갈색거저리	60,000
넓적사슴벌레	500
톱사슴벌레	500

7.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
(단, 농업경영체확인서 제출 필수)
8.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·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
(단, 농업경영체확인서 제출 필수)
9. 복수조합원 가입은 원 조합원과 등본상 주소를 같이하며 원 조합원의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상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재되거나 원 조합원의 농지대장 제출로 가입시에는